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제갈공명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□ **변경 사유** :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내용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15. 7. 1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5.06.30	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70 / 10 / 11	2015,00,50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다른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	<u>장</u>	
다. 모자형 구조	<u>칭기스칸플러스알파</u>	<u>기성장30</u>	
	<u>칭기스칸퇴직연금채권혼합</u>	<u>장기성장40퇴직연금채권혼합</u>	
	<u>칭기스칸퇴직연금주식</u>	<u>장기성장퇴직연금주식</u>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	나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:	나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	
상	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	자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	
나. 투자제한	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	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	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	보증한 채권 제외) 한국주택금	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한	
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	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	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	
2) 동일종목투자	부채권 또는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</u>	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
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	<u>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</u>	<u>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</u>	
[주식]	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</u>	
	<u>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</u>	<u>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</u>	
	<u>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</u>	<u>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</u>	
	<u>증권</u>	<u>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</u>	
	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	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	
	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	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	
	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	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	
	액비중이10%를 초과하는 경우에	시가총액비중이 10%를 초과하는	
	그 시가총액비중(<u>유가증권시장, 코스</u>	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거래소가	
	<u>닥시장</u>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	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	
	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	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	
	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		
	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	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	
		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	



	으로 나눈 비율을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 자하는 경우	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 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자하는 경우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	<u>다른 자투자신탁</u> <u>변경 사항 반영</u>

